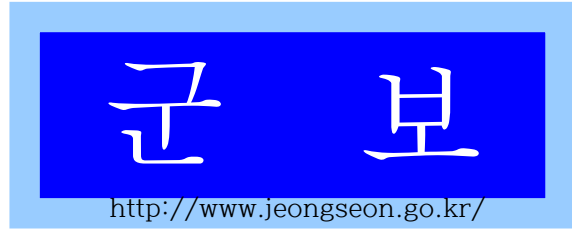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485호 2019. 7. 8. (월)

【고 시】

- 정선군 고시 제2019-145호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3
- 정선군 고시 제2019-153호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4

【공 고】

- 정선군 공고 제2019-717호 정선 군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안) 공람·공고.....6
- 정선군 공고 제2019-719호 월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8
- 정선군 공고 제2019-743호 정선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6
- 정선군 공고 제2019-754호 법령명 변경 등에 따른 정선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22

○ 정선군 공고 제2019-755호 정선군 문화군민운동 지원 조례 등 일괄폐지조례안.....	28
○ 정선군 공고 제2019-756호 정선군공영개발사업공기업지방채발행규칙 등 일괄폐지규칙 안.....	40
○ 정선군 공고 제2019-756호 정선군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2

□ 발행 : 정선군청 기획실 (전화:560-2213, FAX:560-2592)

고 시

정선군 고시 제2019-145호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건물 등의 멸실로 폐지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28일

정 선 군 수

○ 도로명주소 폐지

연번	도로명주소	폐 지 일	폐지사유	비 고 (관련지번)
1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백두대간로 1382	2019. 6. 28.	건물 멸실	임계면 송계리 729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선군청 민원과(☎560-2184)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정선군 고시 제2019-153호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건물 등의 멸실로 폐지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5일

정 선 군 수

○ 도로명주소 폐지

연번	도로명주소	폐 지 일	폐지사유	비 고 (관련지번)
1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강원남로 6786-1	2019. 7. 3.	건물 멸실	고한읍 고한리 330-6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선군청 민원과(☎560-2184)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공 고

정선군 공고 제2019-717호

정선 군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안) 공람·공고

정선 군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 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6월 27일

정 선 군 수

1. 공람목적 : 정선 군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한 주민의견청취
2. 위 치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일원
3. 정선 군관리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안) 도서 : 게재 생략(공람장소 비치)
4. 관련도서 비치 및 열람 장소 : 정선군 도시과, 정선읍사무소
5. 열람기간 : 신문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2019. 6. 27. ~ 2019. 7. 14.)
6. 의견제출 방법 및 장소 : 열람 기간 내 정선군 도시과 및 정선읍사무소에 서면 제출
7. 기타사항 : 문의사항은 정선군 도시과 (033-560-213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공람·공고(안)은 최종 결정된 내용이 아니며, 행정절차 이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6 -

정선군 공고 제2019-719호

월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

월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의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보상계획의 열람 등】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이의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6월 24일

정 선 군 수

1. 사업의 개요

사 업 명	사 업 량	사업기간	편입토지
월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교량 1식 제방 1.23km	2019. 11. ~ 2021. 12.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용산리 398-16번지 외 13필지

2. 사업시행자 : 정선군수

3. 열람기간 및 장소

가. 기 간 : 2019. 6. 24. ~ 2019. 7. 11. (토일요일·공휴일 제외 14일간)

나. 열람장소 : 정선군청 건설과 (☎033-560-2479)

다. 이의신청 :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이의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

4. 보 상 대 상

가. 토지 및 지장물건 조서 : “별첨” (정선군 안전건설과 및 고한읍사무소 비치)

5. 보상(예정)시기 : 2019년 7월 ~ (청구에 의거 예산범위 내에서 보상)

6. 보상방법 및 절차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거 2(3)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 액의 산술 평균치를 기준으로 산정

※ 보상대상 토지면적 1/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자는 감정평가업자 1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나. 사업구간별 보상시기 및 보상에 필요한 구비서류와 보상액은 개별통지 예정

다.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용절차에 의함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선군청 건설과 재해예방팀(☎033-560-24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군 공고 제2019-743호

「정선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4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의 과태료 관련 자치법규 정비과제로 선정·통보된 관련규정을 취지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법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과태료 부과방법에 관한 조항 삭제 (안 제7조 4항)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입법예고 기간 : 2019. 7. 4. ~ 7. 24. (20일간)

5.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24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참조: 안전과장)에게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나.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정선군청 안전과

- 연락처 : 전화(033-560-2131), 팩스(033-560-2174)
- 주 소 : (23161)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안전과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직접방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개정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4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위험구역 설정·게시) ① ~ ③ (생 략) ④ 제3항에 의한 과태료 부과방 법 등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 위규제법」을 준용한다.	제7조(위험구역 설정·게시) ① ~ ③ (현행과 같음) <u><삭 제></u>

관계법령 발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8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4조의6제1항 본문에 따른 위기상황 매뉴얼을 작성·관리하지 아니한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

1의2. 제34조의6제2항 본문에 따른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

1의3. 제34조의6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

2. 제40조제1항(제46조제1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대피명령을 위반한 사람

3. 제41조제1항제2호(제46조제1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위험구역에서의 퇴거명령 또는 대피명령을 위반한 사람

② 제76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등에 가입하지 않은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부과·징수한다.

1.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제1항에 따른 과태료

2. 보험등의 가입 대상 시설의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업무를 처리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 제2항에 따른 과태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8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이용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

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가. 다중이용시설 등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가 법 제34조의6제1항에 따른 위기상황 매뉴얼을 작성·관리하지 않은 경우	법 제82조제1항제1호	30	50	100
나. 다중이용시설 등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가 법 제34조의6제2항에 따른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82조제1항제1호의2	20	30	50
다. 다중이용시설 등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가 법 제34조의6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82조제1항제1호의3	50	100	200
라.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대피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방해한 경우	법 제82조제1항제2호			
1) 대피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30	50	100
2) 대피명령을 방해한 경우		50	100	200
마. 법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방해한 경우	법 제82조제1항제3호			

1) 위험구역 내에서 대피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30	50	100	
2) 위험구역 내에서 퇴거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50	100	150	
3) 위험구역 내에서 대피 또는 퇴거 명령을 방해한 경우		50	100	200	
바. 법 제76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1)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2)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초과 60일 이하인 경우 3)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60일 초과인 경우	법 제82조제2항	30 30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3만원을 더한 금액 120만원에 6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6만원을 더한 금액.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300만원을 넘지 못한다.			

정선군 공고 제2019-754호

“법령명 변경 등에 따른 정선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7월 8일

정 선 군 수

법령명 변경 등에 따른 정선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 개정 이유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자치법규 중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적용 조항 및 관련 법령 명칭이 변경된 자치법규를 개정하여 자치법규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

- 「정선군아동위원정수등에 관한조례」
- 「정선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
- 「정선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나. 상위법령 명칭 변경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

- 「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3. 의견제출

○ 해당 자치법규 일괄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29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기획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전화번호

○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홈페이지, 이메일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우)26131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기획실)
- 전 화: 033-560-2218
- 팩 스: 033-560-2592
- 이 메 일: mermaid@korea.kr
- 홈페이지: <http://www.jeongseon.go.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법령명 변경 등에 따른 정선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법령명 변경 등에 따른 정선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제1조(「정선군아동위원정수등에 관한조례」의 개정) 정선군아동위원정수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아동복지법 제6조의 규정”을 “「아동복지법」 제14조”로 한다.

제2조(「정선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의 개정) 정선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제2조제2호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여성으로서”를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농업인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여성농업인단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의 개정) 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폐수배출부과금 지원보조금: 「물환경보전법」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

제4조(「정선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의 개정) 정선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영 제74조제6호”를 각각 “영 제74조제8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조번	자치법규명	현행	개정안
1	정선군아동위원정수등에관한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아동복지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정선군아동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	제1조(목적) ----- 「 <u>아동복지법</u> 」 제14조----- ----- -----.
2	정선군여성농업인육성지원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 <u>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u> 」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여성농업인”이란 「 <u>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u> 」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여성으로서 「 <u>지방자치법</u> 」 제12조에 따른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 주민을 말한다. 3. “여성농업인단체”란 「 <u>여성농어업인 육성법</u>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4. 5. (생략)	제2조(정의) ----- -----. 1. “농업”이란 「 <u>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u> 」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여성농업인”이란 「 <u>여성농어업인 육성법</u>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농업인으로 「 <u>지방자치법</u> 」 제12조에 따른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 주민을 말한다. 3. “여성농업인단체”란 <u>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u> 4. 5. (현행과 같음)

조번	자치법규명	현행	개정안
3	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 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1. ~ 7. (생략) 8. “보조금”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이전기업에 지원하 는 금액을 말한다. 가. ~ 마. (생략) 바. 폐수배출부과금 지원 보조금: 「수질 및 수생 태계 보전에 관한 법 률」 제41조에 따른 배 출부과금 사. · 아. (생략) 9. ~ 17. (생략)	제2조(정의) ----- ----- --. 1. ~ 7. (현행과 같음) 8.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폐수배출부과금 지원 보조금: 「물환경보전 법」 제41조에 따른 배 출부과금 사. · 아. (현행과 같음) 9. ~ 17. (현행과 같음)
4	정선군 재난관리 기금 운 용 및 관 리 조례	제7조(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 차비용 용자 등) ①영 제74조 제6호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 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 주에 필요한 실비로 한다. ②영 제74조제6호에 따른 임 차비용의 용자규모는 각 세대 별 대피 또는 퇴거에 소요 되 는 총 금액의 70퍼센트 이내 로 하고, 각 세대별 용자한도 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용자기금의 규모와 용자신청 자의 수를 감안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③ (생략)	제7조(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용자 등) ①영 제7 4조제8호----- ----- -----. ②영 제74조제8호----- ----- ----- ----- ----- ----- ----- -----. ③ (현행과 같음)

정선군 공고 제2019-755호

“정선군 문화군민운동 지원 조례 등 일괄폐지조례안”에 대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7월 8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문화군민운동 지원 조례 등 일괄폐지조례안

1. 일괄폐지 이유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자치법규 중 유명무실화되거나 적용대상이 없는 조례를 일괄 폐지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높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효기간 만료된 조례 폐지(안 제1조)

- 「정선군 문화군민운동 지원 조례」

나. 적용대상이 없는 조례 폐지(안 제2조)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범군민 위원회 설립·지원 조례」

3. 의견제출

○ 해당 자치법규 일괄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9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기획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홈페이지, 이메일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우)26131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기획실)
- 전 화: 033-560-2218
- 팩 스: 033-560-2592
- 이 메 일: mermaid@korea.kr
- 홈페이지: <http://www.jeongseon.go.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 문화군민운동 지원 조례 등 일괄폐지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 문화군민운동 지원 조례 등 일괄폐지조례안

제1조(「정선군 문화군민운동 지원 조례」의 폐지) 정선군 문화군민운동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제2조(「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범군민 위원회 설립·지원 조례」의 폐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범군민 위원회 설립·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폐지조례)

□ 정선군 문화군민운동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및 장애인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를 위하여 군민의식, 손님맞이, 군민통합의 문화군민운동으로 성숙한 시민의식을 고취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군민운동”이란 군민의식 함양, 손님맞이, 군민통합을 위한 민간자율참여 운동을 말한다.
2. “문화군민운동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등의 성공개최 지원 및 문화군민운동 실천을 위해 설립된 민간추진 협의회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참여 및 문화군민운동 활성화를 위한 민간추진운동을 지원해야 한다.

- ② 군수는 문화군민운동이 적극 전개될 수 있도록 분야별 시책을 지속 발굴하고 기관·단체 협력체계 구축 등 행정지원을 해야 한다.

제4조(협의회의 사업)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문화군민운동 분야별 사업계획 수립·추진
2. 군민의식 함양, 손님맞이 등 군민역량 결집을 위한 범 군민운동 전개
3. 강원도, 유관기관·단체와의 연계를 통한 범 조성 추진
4. 그 밖에 문화군민 캠페인의 조기정착을 위한 시책개발 추진

제5조(행정지원 등) ① 군수는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협의회 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에 관하여는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협의회가 문화군민운동 실천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으자 할 때에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결산보고 등) 협의회는 매 회계연도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2월말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범군민 위원회 설립·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2018년에 개최되는 제23회 동계올림픽대회 및 제13회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의 성공적 개최 준비를 위하여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범군민 위원회의 설립 및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범군민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 위원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 위원회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재정지원)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과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이하 “동계올림픽”이라 한다)의 성공개최를 위한 동계올림픽 행사 프로그램 운영 및 참여활동, 참여열기 확산, 문화군민의식 고취 등에 관련한 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행정지원 등) 군수는 위원회가 주관하는 각종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직접 지원하거나 유관기관 또는 단체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재정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선군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정선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제정 2013. 10. 02 조례 제235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위원회가 해산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2018평창동계올림픽 정선군추진위원회 지원 조례를 폐지한다.

정선군 공고 제2019-756호

“정선군공영개발사업공기업지방채발행규칙 등 일괄폐지규칙안”에 대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7월 8일

정 선 군 수

정선군공영개발사업공기업지방채발행규칙 등 일괄폐지규칙안

1. 일괄폐지 이유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자치법규 중 유명무실화되거나 적용대상이 없는 규칙을 일괄 폐지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관련 조례 폐지로 불필요해진 규칙 폐지(안 제1조, 제2조, 제3조)
 - 「정선군공영개발사업공기업지방채발행규칙」
 - 「정선군 아리랑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정선군향토박물관운영조례 시행규칙」

3. 의견제출

- 해당 자치법규 일괄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11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기획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홈페이지, 이메일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우)26131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기획실)
- 전 화: 033-560-2218
- 팩 스: 033-560-2592
- 이 메 일: mermaid@korea.kr
- 홈페이지: <http://www.jeongseon.go.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공영개발사업공기업지방채발행규칙 등 일괄폐지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정선군 규칙 제 호

정선군공영개발사업공기업지방채발행규칙 등
일괄폐지규칙안

제1조(「정선군공영개발사업공기업지방채발행규칙」의 폐지) 정선군공영개발사업공기업
지방채발행규칙은 폐지한다.

제2조(「정선군 아리랑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폐지) 정선군 아리랑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정선군향토박물관운영조례시행규칙」의 폐지) 정선군향토박물관운영조례시행규
칙은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폐지규칙)

□ 정선군공영개발사업공기업지방채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선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제12조에 규정된 공영개발사업 공기업지방채(이하 "지방채"라 한다)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방채의 종류 및 발행방법등) ①지방채의 발행가액은 권면 금액으로 하며 지방채 증권은 무기명식으로 한다.

②지방채의 권면금액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10,000,000원권
2. 100,000,000원권
3. 1,000,000,000원권

③증권번호 앞자리와 뒷자리에 표시하는 기호는 10,000,000원권은 "가"로 100,000,000원권은 "나"로 1,000,000,000원권은 "다"로 정한다.

④지방채증권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2. 지방채증권의 발행총액, 발행목적, 권면금액
3. 지방채증권의 기호 및 번호, 발행가액, 이율, 발행일
4. 지방채증권의 상환, 이자지급의 방법 및 기한, 상환장소
5. 지방채증권의 소멸시효
6. 기타 필요한 사항 .

제3조(지방채의 발행) 지방채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권면금액의 지방채를 정선군에서 공영개발사업으로 시행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 시공자에게 교부 소화하거나 공포에 의하여 발행할 수 있다.

1. 택지조성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주택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공단조성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4. 기타 경영수익사업

제4조(지방채의 상환등) ①지방채의 상환은 상환기일에 원리금을 일시에 상환 한다.

②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지방채의 상환기간 및 이자는 별도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④원리금은 정선군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회계자금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기 상환할 수 있다.

제5조(지방채업무의 위탁) 지방채의 발행 및 원리금 상환업무는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지방채증권 재교부등) ①발행된 지방채증권은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한다.

②지방채증권은 공시최고의 절차에 의하여 이를 무효로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지방채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7조(증권의 관인) 증권에 날인된 군수 관인은 인쇄된 인영으로 가름한다.

제8조(공고) ①군수가 지방채를 매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채교부 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서면 통지로 가름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2. 지방채증권의 발행총액, 발행목적, 권면금액
3. 지방채증권의 이율, 상환과 이자지급 방법 및 기한
4. 지방채증권을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으로 한정할 때에는 그 뜻
5. 명의개서 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성명, 주소 또는 영업소
6. 지방채 교부대상 및 기준, 교부기간, 교부장소
7. 기타 필요한 사항

②군수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증권의 일부를 상환하고자 하는 때에도 그 상환액, 상환기일 및 방법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채상환 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서면통지로 가름할 수 있다.

제9조(증권의 보관 및 관리) ①지방채증권의 보관 및 관리업무 위탁은 정선군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회계 출납업무 취급금융기관(이하 "지정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는 계약에 의한다.

제10조(지방채발행 및 상환실적 통보)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 업무를 위탁받은 지정금융기관은 대출 및 상환실적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 2호서식에 의하여 익일 12:00까지 정선군 공영개발사업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지방채증권 원부) ①지방채증권을 발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지방채증권 원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기명식의 증권을 발행한 경우의 지방채증권 원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지방채증권의 번호
2. 지방재정법시행령제8호제1항제2호내지 제10호 및 제12호에 규정된 사항
3. 각 지방채증권의 납입금액과 납입년월일
4. 지방채증권의 발행년월일
5. 각 지방채증권의 취득년월일

6. 원리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7. 지방채권자의 성명과 주소

③무기명식 증권을 발행한 경우의 지방채증권 원부에는 제2항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사항외에 증권의 종류와 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기명식의 지방채증권의 질권의 목적이 되었음을 질권 설정자로부터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지방채증권 원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2조(업무의 감독) 관리자는 지방채증권의 보관, 관리 및 상환업무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정금융기관에 대하여 지방채 취급업무를 확인 감독할 수 있다.

제13조(준용기관) 지방채발행에 관하여 이 규칙과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을 준용한다.

제14조(위임규정)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정선군 아리랑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선군 아리랑박물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물의 자료수집)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 제6조에 따라 유물을 매도하거나 기증 또는 기탁(이하 “기증 등”이라 한다) 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유물 매도·기증 등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매도대상 유물 명세서(별지 제2호서식)를 접수 받아 처리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매도·기증 등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을 수 있다.

1. 유물의 출처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
2. 유물소유를 증명하는 서류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
3. 구입 및 수집대상 분야의 유물이 아니라고 판단될 때

③ 제1항에 따라 유물의 기증 등을 한 사람에게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유물(기증·기탁)증서를 교부한다.

④ 유물의 기탁기간은 기탁자와의 약정기간으로 하되, 상호 합의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기탁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탁자의 반환 요구 시까지로 한다.

⑤ 기증 자료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기증 자료 원부에, 기탁 자료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기탁 자료 원부에 기록·관리 한다.

제3조(유물의 감정)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유물감정평가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그 유물의 소유 또는 기증자에게 유물감정평가 실시 사실을 알리고, 유물감정평가를 받기 위하여 유물을 박물관에 보관할 때에는 보관증(별지 제6호서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물을 구입할 경우 유물의 진위 여부 및 적정가격을 감정하여야 하며, 유물감정 결과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수장품의 관리) ① 군수는 수장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수장품의 관리 상태를 지도·점검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1. 수장품 관리대장: 별지 제8호서식
2. 수장품 카드: 별지 제9호서식

② 군수는 수장품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년 소독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대여, 구입, 이관 및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반입되는 유물은 박물관 수장품과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보험가입, 특수 보관시설 설치 등을 할 수 있다.

제5조(수장고의 관리) ① 수장고를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유물출납원과 같이 출입하여야 하며 별지 제10호서식의 수장고 출입대장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수장고를 출입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위험물 및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의 휴대·반입·사용 등의 행위
2. 흡연·음주 등의 행위
3. 그 밖에 유물에 유해하다고 인정하여 관장이 금지하는 행위

제6조(대여) 조례 제13조에 따라 대여신청은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대관허가 신청 등) ① 조례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박물관시설을 대관 하고자 하는 자는 대관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허가 취소 등의 사유로 유희시설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시로 접수할 수 있다.

② 대관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대관허가변경신청서를 대관예정일 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관허가 신청(변경)을 받은 때에는 그 결과를 3일 이내에 전화 또는 문자메세지로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대관허가의 통지 등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대관허가서: 별지 제14호서식
2. 대관허가불가통지서: 별지 제15호서식
3. 대관허가취소신청서: 별지 제16호서식

④ 군수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대관허가 신청접수대장을 작성·관리 하여야 한다.

제8조(유물의 반환)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유물감정평가를 받기 위하여 박물관에 보관하고 있는 유물 중에서 구입대상에서 제외된 유물은 그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8호서식을 작성하여 매도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반환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기탁관리 받은 유물을 반환하고자 할 때에도 별지 제18호서식을 작성하여 기탁관리를 의뢰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수장품의 이용신청)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수장품을 열람·복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유물이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유물관리관 등 지정) ① 군수는 조례 제11조에 따라 수장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유물관리관 및 유물출납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할 수 있다.

1. 유물관리관: 관장
2. 유물출납원: 학예연구담당 또는 관장이 지명하는 직원

② 유물관리관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유물출납원은 유물관리관의 지휘 및 감독을 받아 그 사무를 보좌한다.

1. 유물의 출납 및 그 기록에 관한 사항
2. 수장품 대장 및 각종 장부의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3. 수장품의 증·감에 대한 사항
4. 수장고 운용 및 수장품의 보관에 관한 사항
5. 수장고 출입 및 수장품의 대여, 열람 및 복제 등에 관한 사항

- ③ 유물관리관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유물을 인수인계할 때에는 「정선군사무인계인수 규칙」에 따라 인수인계 하여야 한다.

제11조(유물출납) ① 유물출납은 유물관리관 책임으로 행한다.

- ② 유물출납원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유물출납대장을 작성·관리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유물을 반입 또는 반출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별지 제21호서식의 유물 반·출입 신청서를 접수 받아 처리한다. 다만, 내부적인 유물 이동시에는 유물이동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유물출납원 부재시 유물출납의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유물관리관이 지정하는 직원의 입회하에 출납할 수 있다.

제12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영) ① 박물관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연중 수시로 모집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른 자원봉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자원봉사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전시안내 자원봉사자: 상설전시 및 특별전시 해설과 안내
2. 체험학습실 자원봉사자: 체험학습실 이용자 안내

- ③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를 모집·운영하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자원봉사자 활동내역 기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정선군향토박물관운영조례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선군 향토박물관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 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05.14>

제2조(수입금관리)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당일 수입금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05.14>

1. 군금고(「정선군 재무회계규칙」 제99조 및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군금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 <개정 2007.05.14> 마감시간 1시간 전까지의 수입금은 당일 군금고에 불입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의한 마감이후의 수입금은 익일 수입금에 합산하여 납입하되 수입금의 장부정리는 익일 수입금과 구분하여야 한다.

제3조 삭제 <2007.05.14>

제4조(자료의 구입) ①정선군향토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 소장할 유물을 유상양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유상양여희망서(별지 제4호서식)
2. 유상양여자료목록(별지 제5호서식)
3. 자료감정서(별지 제6호서식)
4. 유물사진 각 1매

② 관장은 구입유물에 대한 자료를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자료구입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5조(자료의 기증) 박물관에 유물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유물기증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관장은 유물을 기증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9호서식의 기증유물수납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자료의 기탁) ①유물을 기탁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기탁신청서를, 기탁한 유물을 반환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장은 기탁자료대장을 따로 작성하여 정리하여야 하며, 기탁받은 유물은 박물관자료 관리방법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 구성 등) ①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정선군향토박물관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향토박물관 관련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⑤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

한다.

제8조(위원회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관장의 요청이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특별위원회) ①조례 제15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자료의 감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가 위원중에서 선출한 3인의 위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특별위원회는 위원 합의에 의한 연서로써 의결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특별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자료의 등재) 취득한 자료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자료목록 및 별지 제13호서식의 자료카드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자료의 복제) ①자료를 복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자료복제 허가신청서를 자료복제 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자료복제허가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자료복제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복제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자료의 훼손 및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상업광고용으로 이용하고자 할 경우
3.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12조(보칙)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7.05.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선군 공고 제2019-763호

“정선군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7월 8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 이유

경관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및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관련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관계획 및 경관협정 내용을 상위법령 등에 맞게 정비 (안 제7조, 안 제9조, 안 제16조)

나. 사회기반시설 사업 등의 경관심의 대상 조정 (안 제23조, 안 제24조)

- 사회기반시설 심사대상 사업비 50억원 이상→100억원 이상
- 경관심의 대상 건축물 중 위원회 심의 제외조항 신설

다. 경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정비 (안제25조)

- 건축위원회,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경관위원회 기능 수행

라. 심의의제 조항 신설 (안 제31조)

- 군건축위원회, 군도시계획위원회 심의사업에 대한 심의의제 조항 신설

마. “별표” (경관위원회 자문대상) 삭제

3. 의견제출

- 정선군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29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도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홈페이지, 이메일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우)26131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도시과)
- 전 화: 033-560-2466
- 팩 스: 033-560-2596
- 이 메 일: sosimigo@korea.kr
- 홈페이지: <http://www.jeongseon.go.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정선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야간경관”이란 지역경관 요소를 대상으로 야간에 빛에 대한 연출 계획이 도입된 경관을 말한다.

제2조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제3항 중 “있으며, 보완 요구 기간은 영 제2조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를 “있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군수는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계기관 및 단체에 의견 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1.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 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건축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관가이드라인 운용에 관한 사항
4. 교량, 송전탑 등 거대구조물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5. 색채 및 재료 등 경관디자인에 관한 사항
6.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7. 지역의 고유한 자연 및 역사문화 경관의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
8. 경관지구, 미관지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관광특구, 산림보호구역 등 특정경관 관리구역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제9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그 밖의 경관사업 추진을 위해 경관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

제14조제2항 중 “표지를 부착하거나 표창할” 을 “표창 등 포상을 할” 로 한다.

제16조제2호 중 “옥외광고, 건물, 조경과 관련된 조명의 관리” 를 “경관협정구역의 조명” 으로 하고, 제16조제4호를 같은 조 제5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건축물의 외부 색채계획

제5장의 제목 “경관심의 및 자문” 을 “사회기반시설 사업 등의 경관 심의” 로 한다.

제23조제1호 중 “50억원” 을 “100억원”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4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경관위원회 심의를 제외한다.

1. 정선군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제7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위원회 심의·자문 대상 건축물
2.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산업단지와 같은 조 제12호의 준산업단지 안에서의 공장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에 따라 결정·고시된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공장
5. 설계공모 등을 통하여 디자인이 결정된 공공시설물 및 건축물

③ 제1항에 따라 심의를 마친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그 건축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제외한다.

1.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경관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에 위반되지 아니한 경우
 - 나. 심의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 등이 변경되는 부분이 10분의 2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단, 외부 입면의 변동없이 지하층 면적이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
2. 영 제22조제2호에 따른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의 심의로 인하여 변경되는 사항이 경관위원회 심의 결과에 위반되지 아니한 경우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구성·운영) ①군수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정선군 경관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경관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1. 정선군 건축조례 제6조에 따라 설치한 정선군건축위원회
2. 정선군 군계획조례 57조에 따라 설치한 정선군계획위원회

제27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제1호 중 “별표의 사업으로 군수”를 “군수”로 한다.

제31조를 제32조로 하고,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심의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관위원회 심의(자문을 포함한다)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심의내용에 경관계획이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

1. 「정선군 건축 조례」에 따라 정선군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업
2. 「정선군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정선군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도시계획 시설 및 사업

“별표”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공공공간"이란 광장, 가로, 수변공간 등 대중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7. "야간경관"이란 지역경관 요소를 대상으로 야간에 빛에 대한 연출 계획이 도입된 경관을 말한다.
8. "공공시설물"이란 버스승차장, 펜스, 휴지통, 표지판 등 공중의 편의를 위해 설치된 것을 말한다.	<삭 제>
9. "랜드마크"란 인공 또는 자연물로서 지역의 고유한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삭 제>
10. "색채"란 색상을 가진 개별적인 재료의 조화로운 사용을 통하여 형성된 소규모 혹은 광범위한 지역의 이미지를 말한다.	<삭 제>
제6조(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①·② (생 략)	제6조(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군수는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한 자에게	③ ----- ----- -----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 요구 기간은 영 제2조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 설>

제7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 제1항제11호에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1. 경관형성의 미래상 시물레이션
2. 경관의 보호 및 형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 가. 권역별 경관 계획
 - 나. 경관 유형별 특성화 계획
 - 다.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경관특성화 계획
 - 라. 중점 관리지역 경관 계획
 - 마. 랜드마크 형성 계획
 - 바. 공공시설물 디자인 계획
 - 사. 건축물 디자인 계획

----- 있다.

④ 군수는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계기관 및 단체에 의견 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 제1항제11호에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1.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건축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관가이드라인 운용에 관한 사항

아. 야간경관 계획

자. 색채 계획

차. 가로경관 계획

카. 공원·녹지 계획

다. 역사문화 유적지 경관 계획

파. 광고디자인 계획

하. 예술품 설치 가이드라인 계획

3.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해야 할 사항

4. 지구단위계획에서 상세 경관 계획이 필요한 지역 선정

제9조(경관사업계획서) 영 제8조 제1항제7호에 따라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략)

<신설>

제14조(경관사업에 대한 평가) ① (생략)

4. 교량, 송전탑 등 거대구조물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5. 색채 및 재료 등 경관디자인에 관한 사항

6.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7. 지역의 고유한 자연 및 역사 문화 경관의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

8. 경관지구, 미관지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관광특구, 산림보호구역 등 특정경관 관리구역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제9조(경관사업계획서) -----

--.

1.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의 경관사업 추진을 위해 경관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

제14조(경관사업에 대한 평가) ① (현행과 같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양호한 경관사업 시행자 등에 대하여는 표지를 부착하거나 표창할 수 있다.

③ (생략)

제16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생략)

2. 옥외광고, 건물, 조경과 관련된 조명의 관리 등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3. (생략)

<신설>

4. (생략)

제5장 경관심의 및 자문

제23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군수가 시행 또는 승인하는 50억원 이상인 사업

② -----

----- 표창 등 포상을 할 -----
-----.

③ (현행과 같음)

제16조(경관협정의 내용) -----

-----.

1. (현행과 같음)

2. 경관협정구역의 조명 -----

3. (현행과 같음)

4. 건축물의 외부 색채계획

5. (현행 제4호와 같음)

제5장 사회기반시설 사업 등의 경관 심의

제23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

-----.

1. ----- 100억원 -----

2.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
기물처리시설로 시설면적 3,3
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3.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전원설비로 바닥에서 높이가
50미터 이상인 시설

제24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생 략)

<신 설>

<삭 제>

<삭 제>

제24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
축물의 경우에는 경관위원회 심
의를 제외한다.

1. 정선군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제7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위
원회 심의·자문 대상 건축물

2.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산업단
지와 같은 조 제12호의 준산
업단지 안에서의 공장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제51조제1항에 따
라 결정·고시된 지구단위계획
구역 안에서의 공장

5. 설계공모 등을 통하여 디자
인이 결정된 공공시설물 및

<신 설>건축물

③ 제1항에 따라 심의를 마친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그 건축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제외한다.

1.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경관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에 위반되지 아니한 경우

나. 심의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 등이 변경되는 부분이 10분의 2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단, 외부 입면의 변동 없이 지하층 면적이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

2. 영 제22조제2호에 따른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의 심의로 인하여 변경되는 사항이 경관위원회 심의 결과에 위반되지 아니한 경우

제25조(구성·운영) 군수는 법 제

제25조(구성·운영) ①군수는 법

29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정선군 경관위원회(이 조례에서 "경관위원회"라 한다)를 영 제25조, 영 제26조 및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운영한다.

1. 위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해제할 수 있다.

가.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자문에 응하지 아니한 때
다. 그 밖에 경관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때

2.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3.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위원에게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제27조(수당 등) 경관위원회 또는 공동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의

제29조제1항에 따라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정선군 경관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경관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1. 정선군 건축조례 제6조에 따라 설치한 정선군건축위원회
2. 정선군 군계획조례 57조에 따라 설치한 정선군계획위원회

제2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실비를 지급한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
법 제30조제2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별표의 사업으로 군수가 경관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중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2. (생략)

<신설>

수 있다.

제28조(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

-----.

1. 군수-----

2. (현행과 같음)

제31조(심의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관위원회 심의(자문을 포함한다)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심의내용에 경관계획이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

1. 「정선군 건축 조례」에 따라 정선군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업 <개정 2013. 7. 26.>

2. 「정선군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정선군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도시계획 시설

제31조 (생 략)

및 사업

제32조 (현행 제31조와 같음)

[별표] 경관위원회 자문대상(제28조제1호 관련)

구분	분류	대상	
도시계획	도시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대단위 사업	가. 도시지역 1)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 1만제곱미터 이상 2) 공업지역 : 3만제곱미터 이상 3) 보전녹지지역 : 5천제곱미터 이상 나. 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이상 다.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이상 라. 자연환경보전지역 : 5천제곱미터 이상	
공공공간	공공문화, 집회시설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전시장, 체험시설	
	경관개선을 위한 공공디자인사업	색채, 벽화, 조형물제작 등 단일 공종으로 사업비 1억원을 초과하는 사업	
	옥외광고 정비사업	30개소 이상의 점포가 참여하는 옥외광고 정비사업을 위한 디자인 및 실시설계 사업	
	경관을 고려한 도로 및 도로시설물	연장 200미터 이상	
공공시설물	공공시설물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	공공시설물	가로등, 도로명판, 보안등, 게시판, 장애인 유도사인, 안내표지, 맨홀, 경계석, 보도블럭, 벤치, 버스쉼터
		문화관광 시설물	관광안내소, 관광안내도, 관광안내표지판, 동상, 기념비, 조형물, 표지판, 기념표석
건축물	건축물	폭15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건축물로 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관계법령 발췌서

□ 경관법

제9조(경관계획의 내용) ① 경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수립하는 경관계획에는 제4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행정시장, 구청장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이 수립하는 경관계획에는 제5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 4. 18.>

1.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경관구조의 설정에 관한 사항
 4. 중점적으로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여야 할 구역(이하 "중점경관관리구역"이라 한다)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이하 "경관지구"라 한다)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제16조에 따른 경관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7. 제19조에 따른 경관협정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경관관리의 행정체계 및 실천방안에 관한 사항
 9. 자연 경관, 시가지 경관 및 농산어촌 경관 등 특정한 경관 유형 또는 건축물, 가로(街路), 공원 및 녹지 등 특정한 경관 요소의 관리에 관한 사항
 10.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 ② 경관계획이 이미 수립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관할구역에서 수립하는 시·군·구·행정시·경제자유구역청의 경관계획은 해당 시·도의 경관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시·군·구·행정시·경제자유구역청의 경관계획 내용과 시·도의 경관계획의 내용이 다른 경우 시·도의 경관계획이 우선한다.
- ③ 시·도지사, 시장·군수, 행정시장, 구청장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이하 "시·도지사등"이라 한다)은 경관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미 수립된 다른 법률에 따른 경관 관련 계획에 부합되게 하여야 하고, 경관계획이 수립된 이후 다른 법률에 따른 경관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미 수립된 경관계획에 부합되게 하여야 한다.
- ④ 경관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부합되어야 하며, 경관계획의 내용과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 다른 경우 도시·군기본계획이 우선한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경관계획의 수립기준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26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①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이하 이 조에서 "발주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회기반시설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9조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경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8. 3. 13.>

1. 「도로법」에 따른 도로
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철도시설
3.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4. 「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기준은 환경 관계 법률에 따른 환경성평가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청에서 구성한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심의 결과를 15일 이내에 해당 경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건축물의 경관 심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경관지구의 건축물(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3.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4. 그 밖에 관할지역의 경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② 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기준은 환경 관계 법률에 따른 환경성평가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우수한 경관을 창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 제42조, 제55조, 제58조, 제60조 및 제61조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허가권자는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기준의 완화 여부와 적용 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기준 완화 요청 및 결정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경관위원회의 설치) ①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등 소속으로 경관위원회를 둔다. 다만, 경관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 행정시장, 구청장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은 별도의 경관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행정시 및 경제자유구역청을 포함한다)가 속한 시·도에 설치된 경관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시·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등은 경관 관련 사항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와 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같은 항 단서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여 수행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칠 수 있다.

제31조(경관위원회의 구성·운영)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관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경관법 시행령

제2조(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안의 처리절차) ①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이하 "경관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주민(경관계획의 수립에 따른 이해관계인을 포함한다)은 경관계획수립제안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2.>

1.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2.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이하 "행정시"라 한다)의 시장(이하 "행정시장"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3. 행정시장
4.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광역시의 군수(이하 "구청장등"이라 한다)
5.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행정기구(이하 "경제자유구역청"이라 한다)의 장(이하 "경제자유구역청장"이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받은 시·도지사, 시장·군수, 행정시장, 구청장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이하 "시·도지사등"이라 한다)은 제안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제안을 경관계획에 반영할 것인지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의 범위에서 한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른 제안을 경관계획에 반영할 것인지를 결정하려는 경우 필요하면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등 소속으로 설치된 경관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관계획의 수립 제안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행정시 및 경제자유구역청의 경우에는 행정시 및 경제자유구역청이 소속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를 말한다

다. 이하 같다]로 정한다.

제8조(경관사업 사업계획서 등)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경관사업의 시행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경관계획을 수립한 시·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제7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1. 사업의 목표
2. 사업주체
3. 사업 내용 및 추진방법
4.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5. 유지관리 방안
6. 사업비용
7.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이하 "경관위원회"라 한다)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에서 경관사업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경관사업의 효과 및 필요성
2. 경관사업 대상지역의 경관계획
3. 주변지역의 경관에 미치는 영향 및 주변지역 경관과의 조화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9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경관사업추진협의체"라 한다)는 경관사업 대상지역의 주민 및 이해관계인,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경관 관련 전문가 또는 공무원 등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경관사업추진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경관사업에 관한 의견수렴 및 개선사항의 건의
2. 경관사업에 대한 교육 및 홍보
3. 경관사업 추진에 따른 이해관계의 조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운영 및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1조(경관협정의 내용) 법 제19조제4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녹지, 가로, 수변공간(水邊空間) 및 야간조명 등의 관리 및 조성에 관한 사항
2. 경관적으로 가치가 있는 수목(樹木)이나 구조물 등의 관리 및 조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22조(경관과 관련된 위원회)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란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말한다. <개정 2015. 12. 22., 2015. 12. 28., 2016. 7.

6., 2017. 2. 28., 2017. 7. 26.>

1. 다음 각 목의 위원회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위원회

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3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두는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

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 두는 중앙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마.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두는 중앙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두는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사. 「항만법」 제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아.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는 새만금위원회

2. 다음 각 목의 위원회로서 해당 시·도지사등(행정시장 및 경제자유구역청장의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이 지정하는 위원회

가.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건축위원회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농업·농촌및식품 산업정책심의회

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도시공원위원회

마.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사.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위원회

□ 강원도 경관형성 조례

제4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7. 26., 2014. 7. 11.>

1. 경관형성의 미래상 시뮬레이션

2. 경관의 보호 및 형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 가. 경관 유형별 특성화 계획
 나.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경관특성화 계획
 다. 경관 중점 관리지역 경관연출계획
 라. 랜드마크 형성 및 조망 연출계획
 마. 자연친화형 공간디자인 계획
 바. 공공시설물 디자인 연출계획
 사. 건축물 디자인과 야경계획
 아. 색채계획
 자. 가로경관계획
 차. 공원·녹지계획
 카. 역사문화 유적지 경관계획
 타. 옥외시설물 및 광고디자인 계획
 파. 예술품 설치 가이드라인 계획
3.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할 사항
4. 지구단위계획에서 상세 경관계획이 필요한 지역 선정
5. 그 밖에 경관형성을 위해 강원도 경관위원회(이하 “경관위원회”라 한다)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6조의2(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영 제18조제1항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 중 도지사가 시행 또는 승인하는 100억원 이상의 사업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4. 7. 11]
- 제16조의3(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지구의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
 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서 해당 경관계획에서 경관심의를 받도록 정하는 건축물
 3.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건축물로서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증축으로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되는 건축물 포함) [본조신설 2014. 7. 11]
- 제19조(심의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위원회에서 사업을 심의할 때에는 도 및 시·군의 경관계획과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각종 개발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1. 「강원도립공원 관리 조례」에 따라 도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업 <개정 2013. 7. 26.>
 2. 「강원도 건축 조례」에 따라 강원도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업 <개정 2013. 7. 26.>
 3. 「강원도 지역연안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강원도 지역연안

관리심의회 심의를 받은 사업

4. 「강원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강원도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업 <개정 2013. 7. 26.>

5. 「강원도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도시계획시설 및 사업 <개정 2013. 7. 26.>

6. 삭제 <2014. 7. 11.>